##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59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김한규·김 윤·전진숙

백혜련 • 김태년 • 이재정

박정현 • 박홍배 • 정진욱

김영환 • 박희승 • 위성곤

박상혁 • 민병덕 • 양부남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설비 사용전점검과 사용 중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조성한 것으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수검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며, 일반용전기설비의 수검자가 기금 조성에 전혀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기금에서 전액을 지원받게 되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기시공업체들이 현장 전

기설비 시공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불필요한 인력·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수검자에게 점검 비용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전기시공업체들의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	제42조(수수료 등)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의2.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을 받으려는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